

##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

제정 2015. 7. 28 조례 제1478호  
일부개정 2016. 12. 12 조례 제1621호(시청, 구청,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및  
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)  
일부개정 2019. 12. 13 조례 제1978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3. 7. 31 조례 제2425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 
일괄개정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 
덜어드리고,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 
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홀로 사는 노인”이란 용인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 중 가족  
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.
2. “고독사”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  
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.
3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  
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.
4. “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”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 
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, 안부전화, 생활교육 등의 서비  
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노인복지법」 제4  
조,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  
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  
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 
1.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

##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

2.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
4.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
5.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
6.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"호스피스"를 지원하는 사항
7.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고독사 예방체계 구축)**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·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.

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대상)** ① 65세 이상 용인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 <개정 2023. 7. 31>

②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 <개정 2016. 12. 12, 2019. 12. 13>

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.

**제7조(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)**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,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·화재·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, 정부지원사

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2. 12 조례 제1621호, 시청, 구청,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「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주민센터”를 “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⑦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12. 13 조례 제1978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
⑫ 「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를 “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부칙 <2023. 7. 31 조례 제242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